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February 23, 2026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OECD : '효과적 상호합의절차(MAP) 매뉴얼' 2026 년 개정판 발간

OECD 는 '상호합의절차 매뉴얼(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2026 년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BEPS 포괄적 이행체계(BEPS Inclusive Framework) 및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 FTA)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조세 분쟁 해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개정 매뉴얼은 상호합의절차(MAP)의 효과적 운영과 관련해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과 납세자에게 포괄적인 실무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FTA MAP 포럼에서 권한 있는 당국들이 마련한 59 개의 모범 사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은 절차에 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인력 구성 및 해결지향적 접근 방식 등 조직 측면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각 관할권(국가/지역)이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MAP 중재에 관한 상세 지침과 모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절차를 이제 막 도입했거나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관할 당국을 위한 실무 템플릿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인도 : 이전가격 세이프하버 제도 개정 초안 발표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CBDT)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2025 (Income-tax Act, 2025)과 관련하여, 2026년 소득세 규칙 초안 및 관련 서식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초안은 2026-27년 연방예산(Union Budget)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가격 세이프하버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IT 서비스 범주의 통합:** 현행 세이프하버 규정상 구분되어 있던 IT, ITeS, KPO 및 소프트웨어 R&D 서비스를 단일 '정보기술(IT) 서비스' 범주로 통합
- **이익률 하향 조정:** 통합된 IT 서비스 범주에 대해 영업비용(operating expenses) 기준 15.5%의 이익률을 적용 (현행 규정에서 서비스 유형별로 규정된 17%~24% 범위 대비 하향)
- **적용 대상 거래금액 기준 상향:** 적용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현행 INR 300 crores(약 미화 3,300만 달러)에서 INR 2,000 crores(약 미화 2억 2,000만 달러)로 상향
- **적용기간 연장:** 세이프하버 적용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 데이터센터 서비스에 대한 신규 세이프하버 도입
- 관련 컴플라이언스 절차 및 문서화 요건

CBDT는 동 규칙 초안 및 서식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3-법규국조-3103, 2025.10.10

제목: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2 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아버지는 미국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할 예정.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4)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03 관세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공개

1. 개요

관세청은 2026년 2월 6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 변화를 정리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총 3개 정책 카테고리(①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③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하에 14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사항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관세행정은 무역 지원과 규제 합리화, 납세자 보호 강화, 그리고 국경관리의 엄정성 제고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상세는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이라는 카테고리 하에 있는 3가지 주요 내용이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상 주요 3가지

- (1)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

I. 제도 개요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HS 코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관련 사안 등에 한하여

가산세 감면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품목분류 분야까지 감면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II. 주요 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이후 사전심사 결과 통보 전 우선 수입신고를 한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또는 동일 물품)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 분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수정신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2 개월 내 자진 수정 시 가산세가 감면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는 사전심사 신청 이후 결과 통보까지의 기간 중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일정 부분 제도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종전내용	개정내용
(신 설)	<p>제 42 조의 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p> <p>7. 제 86 조제 2 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 42 조제 1 항제 1 호의 금액</p> <p>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턴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p> <p>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턴 2 개월이 되는 날까지</p>

III. 기대효과

해당 규정의 적용을 통해 HS 코드 분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전심사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심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되, 통관 일정상 선신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결과 통보 후 2 개월 내 정정이라는 명확한 대응 기한이 부여되므로 가산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HS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품목에 대해 사전심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통관 지연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ACVA 결정 물품(과세가격) 관세조사 제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개정)

I. 제도 개요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를 조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사전심사를 통해

과세가격의 적정성이 이미 확인된 사안에 대해 동일 쟁점을 반복 조사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개정 전에는 ACVA 결정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거래관계 변경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ACVA 결정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품목분류, 외환거래, 수입요건 등 과세가격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가능합니다. 즉,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다른 분야의 법규 준수 여부는 별도로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중전내용	개정내용
제 9 조(관세조사분야) ①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제 9 조(관세조사분야) ①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법 제 3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결과가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III. 기대효과

이 개정은 과세가격 분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특수관계 거래 구조를 가진 다국적 기업의 경우, ACVA 를 통해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정된 이후 해당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 리스크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CVA 제도의 실질적 유인이 강화되어 기업의 자발적 사전심사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당국 입장에서도 조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관세법 제114조 제1항 개정)

I. 제도 개요

관세조사 개시 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준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 조치입니다.

II. 주요 내용

기존에는 관세조사 개시 15 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 조사에 대해 조사 개시 20 일 전 통지하도록 통지기간이 연장됩니다.

한편, 불복청구 등으로 재조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조사 개시 7 일 전 통지하도록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관세조사와 재조사를 구분하여 절차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중전내용	개정내용
제 114 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 110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 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4 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 110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 일[제 118 조제 4 항제 2 호 후단 또는 제 128 조제 1 항제 3 호 후단(제 131 조제 2 호 전단과 제 132 조제 4 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 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기대효과

사전통지 기간이 20 일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은 내부 자료 점검 등 조사 대응 준비를 보다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조사 통지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사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시사점

이번 「2026 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관세행정의 정책 방향이 '지원 강화'와 '관리 엄정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통관·행정 절차의 개선 및 지원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관세국경 관리의 엄정화 기조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 관련 제도 변화는 기업의 불복·권리구제 전략 및 내부 통제 프로세스 재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Key Contacts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